



안세회계법인 • 829-7575

세 稅 계 計 재 財 경 經 AnSwer

••• 2021/11/22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

회계법인 사무직원의 적법 업무범위와 성실근무 관리감독 관련 공인회계사법 규정들

- 회계법인 사무직원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법 제50조(비회계사는 감사불가) 위반의 중대한 범죄임
- 특히 각 직원들 기장거래처의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(직무제한 독립성 준수) 위배로서, 불법감사수행과 독립성 위배라는 중복되는 범죄임.
- 또한 소속회계사 중에서도 파트너(출자사원)이사로 등기된 회계사만 감사수행가능(법 제34조) 규정이 상존함.
- 회계법인의 사무직원 고용과 지도감독책임(법 제13조)
회계사는 직무보조하는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부담
- 직무범위(제2조) : 회계감사·기장·회계처리·세무대리는 회계사 고유업무이므로 사무직원은 중앙통제지침과 품질관리·운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, 임의대로 행하면 안됨.
- 공정성실(제15조) : ① 누구나 공정·성실히 직무수행하며 ② 기장·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③ 품위손상행위는 안 되며 ④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하면 안됨.
- 명칭사용금지(제11조) : 사무직원은 공인회계사 등 유사명칭 사용 절대금지
- 사용불가(회계법인 경영진 오인명칭) 전무, 상무, 이사, 부대표 등
- 사용가능 : 사무장, 팀장, 실장, 부장, 차장, 과장 등 직원 신분 Title
- 비밀엄수(제20조)
회계사와 사무직원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절대 금지임.
- 직무제한(제21조) : 회계감사금지
① 본인·배우자가 임원인 회사, 1년내 직원이었던 회사, 이해관계회사 ② 회계·재무제표작성, 내부감사대행, 재무정보체제구축운영 ③ 자산·부채 등 매도매수실사, 가치평가 의견제시 ④ 인사·조직지원·자문·충당부채계산 ⑤ 민·형사소송자문 ⑥ 자금조달·투자·알선·중개 ⑦ 중요자산처분 등 의사결정자·임원역할 등
- 경업금지(제35조)
소속 사무직원은 회계법인 업무에 속하는 동일·유사업무를, 자기나 제3자 명의로 수행하면 안됨.
- 명의대여 등 금지(제22조)
① 사무직원 이외 다른 사람에게 회계법인 상호 사용금지하고, 등록증 대여금지
② 부정청탁 등 금지, 금품·이익수수요구와 부정약속금지, 위촉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금전이득은 협조·상담금지
- 사무실 사용(제32조)
사무직원은 회계법인의 본사·분실·각 지점 등 사업장 근무(또는 재택근무 가능함).
- 성실신고확인서(소득세법 제70조의2) : 성실확인인은 회계감사에 준하는 인증업무로 소속회계사만 수행가능함.